

# 목 차

정 관 .....	1
-----------	---

# 정 관

## 부 칙

한국알콜산업주식회사정관

제정 1984. 7. 6. 발기인회

개정 1984. 7. 23. 창립주주총회

개정 1984. 9. 23. 제2회 임시주주총회

개정 1984. 12. 6. 제3회 임시주주총회

개정 1985. 2. 27. 제1회 정기주주총회

개정 1986. 6. 28. 임시주주총회

개정 1987. 3. 10. 임시주주총회

개정 1987. 3. 14. 임시주주총회

개정 1987. 8. 20. 임시주주총회

개정 1987. 10. 2. 임시주주총회

개정 1990. 2. 24.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1992. 2. 28.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1992. 7. 15. 임시주주총회

개정 1993. 2. 27.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1994. 2. 26.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1996. 2. 28.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1997. 2. 28.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1998. 2. 27.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1999. 2. 26.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00. 2. 28.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04. 3. 26.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07. 3. 23.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08. 3. 21.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10. 3. 19. 제26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13. 3. 22. 제29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14. 3. 21.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15. 3. 27.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17. 3. 24. 제33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19. 3. 26.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20. 3. 31.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22. 3. 29.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2022. 3. 29.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한국알콜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ALCOHOL INDUSTRIAL CO., LTD.(약호 KAI)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정의 제조와 판매
2. 아세트알데히드의 제조와 판매
3. 초산에틸 및 초산부틸의 제조와 판매
4. 공업용 주정의 제조와 판매
5. 전 각호 관련 석유화학유도체제품 및 정밀화학제품의 제조와 판매
6. 전 각호 관련 원료 및 완제품의 수입과 수출
7. 부동산 임대업
8. 비금속광물의 생산, 제조 및 판매업
9. 식음료의 생산 및 판매업
10. 사무 및 기술 용역 서비스업
11.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12.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용인시 내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a.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 <삭제>

제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의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예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3조 <삭제>

####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사 채

####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행사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9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대

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3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1절 이 사

제31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 (이사의 해임)

- 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사업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직 이사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변경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결의 요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삭제>

제34조 (이사의 직무)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의2 (비등기임원)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③ 비등기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5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 ③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20억 이상, 이사에게 10억 이상을 지급한다.
- ④ 제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 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제36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절 이 사 회

### 제37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42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3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본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제6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6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7조 (감사록)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7 장 회 계

제48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감사위원의 분리 선임·해임) ① 제44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준비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제51조의2 <삭제>

제51조의2 <삭제>

제52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삭제>

## 제 8 장 보 칙

제53조 (세칙내규) 당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세칙과 내규를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54조 (발기인) 당사의 설립 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이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과 같이 주소, 성명을 기명날인 한다.

서기 1984년 7월 6일

(공증일자) 등부 1716호 (1984. 7. 18)

부 칙 (1992년)

1. 이 정관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36조 1항의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1986년 6월 24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993년 2월 27일)

1. 이 정관은 199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제36조는 1993년 2월 27일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결의한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년 2월 26일)

1. 이 정관은 199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제36조 중 임원 및 감사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1994년 2월 26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 결의한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년 2월 28일)

1. 이 정관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4항, 제11조 1항, 제15조 1항, 제23조 1,2항, 제24조, 제26조 2항, 제30조 3항, 제31조 3,4항, 제3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2항 신설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년 2월 28일)

1. 이 정관은 199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제5조는 1997년 2월 28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결의한 바에 의한다.

부 칙 (1998년 2월 27일)

1. 이 정관은 199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제3조는 1998년 2월 27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정, 결의한 바에 의한다.

부 칙 (1999년 2월 27일)

1. 이 정관은 199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②항, 제26조 ①항, ②항, 제36조 ①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 ③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2월 28일)

1. 이 정관은 199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년 3월 26일)

1.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년 3월 23일)

1.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3월 21일)

1.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3월 19일)

1.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년 3월 22일)

1.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3월 21일)

1.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3월 27일)

1.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년 3월 24일)

1. 이 정관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26일)

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3월 31일)

1. 이 정관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3월 29일)

1.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제44조제3항·제7항 및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3. 제44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3년 3월 28일)

1.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풍한발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단산동 1가 12  
대표이사 김일우

우풍화학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대표이사 김석주

풍국주정공업주식회사  
대구시 북구 침산동 117-3  
대표이사 이규호

주식회사무학주정  
경남 의창군 내서면 중리 1451-33  
대표이사 최규섭

보 해 산 업 주 식 회 사  
전남 순천시 덕암동 169  
대표이사 진 중 필

일 산 실 업 주 식 회 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94-15  
대표이사 이 영 환

서 호 주 정 공 업 주 식 회 사  
전북 전주시 송천동 1가 298-1  
대표이사 박 창 훈